

##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07-제66호
----------	-----------

제출연월일 2007. 10. 2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이 법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위원회의 관할대상을 “사천시 소속직원”에서 “사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사천시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직원”을 “사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안 제3조제2항)
- 나.시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신설(안 제8조)

###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07. 8. 17 . ~2007. 9 .8(23일)
    -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공고
    - 다) 예고문안 : 따로 붙임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제117회 임시회 - 총무위 부록)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중“각호”를“각호”로 한다.

제2조제1항중“시장”을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법관·교육자”를 “법관, 교육자”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사천시 소속직원”을 “사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중 “사천시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직원”을 “사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동조중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	제명: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목적)----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구성)①----- -----각호-----시장-----.	제2조(구성)①----- -----각 호-----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법관·교육자----- -----.	1.-----법관, 교육자----- -----.
2.(생략)	2.(현행과 같음)
②-----각호----- -----.	②-----각 호----- -----.
1 ~ 2(생략)	1 ~ 2(현행과 같음)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①----각호-----.	제3조(기능)①----각 호-----.
1 ~ 4(생략)	1 ~ 4(현행과 같음)
②----- 각호-----.	②----- 각 호-----.
1. 사천시 소속직원 -----.	1. 사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2. 사천시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직원----.	2. 사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제6조(회의 등)①생략	제6조(회의 등)①(현행과 같음)
②----- -----각호----- -----.	②----- -----각 호----- -----.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등)----- -----“사천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 -----.	제9조(수당등)-----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 -----.
제9조(생략)	제10조(현행 제9조와 같음)

(제117회 임시회 - 총무위 부록)

## 공 직 자 윤 리 법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098호]

第9條 (公職者倫理委員會) ② 각 公職者倫理委員會의 管轄은 다음과 같다.<改正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2006.12.28>

6. 市·郡·區公職者倫理委員會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第20條의2 (국회 등에의 보고)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